|  |  |  |
| --- | --- | --- |
|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017년 9월 7일  제1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를 규율하고 국가안전 및 공공이익을 수호하며 공민•개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인터넷 정보 내용 관리 업무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위임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단체대화방'이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개설한 것으로 단체의 온라인 정보교류에 사용되는 사이버 공간을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이용자'라 함은 단체대화방 개설자•관리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제3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전국의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 및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직책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 및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정확한 유도 방향을 유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널리 선양하며 긍정적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육성하고 양호한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내용 안전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고 서비스 규모와 어울리는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회원가입, 정보심사, 응급처리, 안전방호 등 관리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관리규칙 및 플랫폼 공약을 제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백그라운드 실명(實名), 포그라운드 자발'의 원칙에 따라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이용자의 진실한 신분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진실한 신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를 위하여 정보 발표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용자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변조•훼손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매각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단체대화방의 성격•유형, 구성원 규모, 활약도 등에 근거하여 등급화•분류화 된 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관리제도를 제정하여 국가 또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비안(備案)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단체대화방의 정보 전파 질서를 규율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이용자 신용등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신용등급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 규모와 관리능력에 근거하여 단체대화방 구성원 수 상한과 개인의 개설가능 단체대화방 개수 및 가입가능 단체대화방 개수 상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유일한 단체대화방 식별코드를 설정 및 표시하여야 하며 구성원 수가 일정 규모에 도달한 단체대화방의 경우 단체대화방 정보 페이지를 설치하여 단체대화방의 명칭, 구성원 수, 유형 등 기본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단체대화방의 규모와 유형에 근거하여 단체대화방 개설자의 진실한 신분, 신용등급 등 단체대화방 개설 자격을 등급화하고 심사하여야 하며 단체대화방 개설•가입 등에 대한 심사•검증 기능을 완비하고 단체대화방 개설자•관리자 및 구성원의 그룹 내 신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개설자•관리자는 단체대화방 관리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률•법규, 이용자 약관 및 플랫폼 공약에 의거하여 단체대화방의 온라인 행위와 정보 발표를 규율함으로써 문명적이고 질서 있는 인터넷 집단적 공간을 구축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은 단체대화방의 정보 교류에 참여함에 있어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문명적으로 소통하여야 하며 이성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단체대화방 개설자•관리자를 위하여 단체대화방 관리에 필요한 기능 권한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단체대화방을 이용하여 법률•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전파가 금지된 정보와 내용을 전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단체대화방에 대하여 법률•약정에 따라 경고•시정, 발표 일시 중단, 단체대화방 폐쇠 등 처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 보관과 더불어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단체대화방 개설자•관리자 등 이용자에 대하여 법률•약정에 따라 신용등급 강등, 관리권한 일시 중단, 단체대화방 개설 자격 취소 등 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 보관과 더불어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수립하여 법률•약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단체대화방 및 단체대화방 개설자•관리자•구성원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단체대화방 서비스 기능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 보관과 더불어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사회대중 및 업계조직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신고•제보 채널을 구축 및 완비하고 간편한 제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고•제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직책에 의거하여 제보 접수•처리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인터넷 업계조직이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를 지도하여 업계 공약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사회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13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술지원과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웹로그를 최소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유관부서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이 규정은 201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  | **互联网群组信息服务管理规定**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2017年9月7日  　　 第一条 为规范互联网群组信息服务，维护国家安全和公共利益，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国务院关于授权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负责互联网信息内容管理工作的通知》，制定本规定。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提供、使用互联网群组信息服务，应当遵守本规定。  　　 本规定所称互联网群组，是指互联网用户通过互联网站、移动互联网应用程序等建立的，用于群体在线交流信息的网络空间。本规定所称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是指提供互联网群组信息服务的平台。本规定所称互联网群组信息服务使用者，包括群组建立者、管理者和成员。  　　 第三条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负责全国互联网群组信息服务的监督管理执法工作。地方互联网信息办公室依据职责负责本行政区域内的互联网群组信息服务的监督管理执法工作。  　　 第四条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和使用者，应当坚持正确导向，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培育积极健康的网络文化，维护良好网络生态。  　　 第五条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应当落实信息内容安全管理主体责任，配备与服务规模相适应的专业人员和技术能力，建立健全用户注册、信息审核、应急处置、安全防护等管理制度。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应当制定并公开管理规则和平台公约，与使用者签订服务协议，明确双方权利义务。  　　 第六条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应当按照“后台实名、前台自愿”的原则，对互联网群组信息服务使用者进行真实身份信息认证，用户不提供真实身份信息的，不得为其提供信息发布服务。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应当采取必要措施保护使用者个人信息安全，不得泄露、篡改、毁损，不得非法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  　　 第七条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应当根据互联网群组的性质类别、成员规模、活跃程度等实行分级分类管理，制定具体管理制度并向国家或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备案，依法规范群组信息传播秩序。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应当建立互联网群组信息服务使用者信用等级管理体系，根据信用等级提供相应服务。  　　 第八条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应当根据自身服务规模和管理能力，合理设定群组成员人数和个人建立群数、参加群数上限。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应设置和显示唯一群组识别编码，对成员达到一定规模的群组要设置群信息页面，注明群组名称、人数、类别等基本信息。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应根据群组规模类别，分级审核群组建立者真实身份、信用等级等建群资质，完善建群、入群等审核验证功能，并标注群组建立者、管理者及成员群内身份信息。  　　 第九条 互联网群组建立者、管理者应当履行群组管理责任，依据法律法规、用户协议和平台公约，规范群组网络行为和信息发布，构建文明有序的网络群体空间。  　　 互联网群组成员在参与群组信息交流时，应当遵守法律法规，文明互动、理性表达。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应为群组建立者、管理者进行群组管理提供必要功能权限。  　　 第十条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和使用者不得利用互联网群组传播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禁止的信息内容。  　　 第十一条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应当对违反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的互联网群组，依法依约采取警示整改、暂停发布、关闭群组等处置措施，保存有关记录，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应当对违反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的群组建立者、管理者等使用者，依法依约采取降低信用等级、暂停管理权限、取消建群资格等管理措施，保存有关记录，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应当建立黑名单管理制度，对违法违约情节严重的群组及建立者、管理者和成员纳入黑名单，限制群组服务功能，保存有关记录，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第十二条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和使用者应当接受社会公众和行业组织的监督，建立健全投诉举报渠道，设置便捷举报入口，及时处理投诉举报。国家和地方互联网信息办公室依据职责，对举报受理落实情况进行监督检查。  　　 鼓励互联网行业组织指导推动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制定行业公约，加强行业自律，履行社会责任。  　　 第十三条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应当配合有关主管部门依法进行的监督检查，并提供必要的技术支持和协助。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应当按规定留存网络日志不少于六个月。  　　 第十四条 互联网群组信息服务提供者和使用者违反本规定的，由有关部门依照相关法律法规处理。  　　 第十五条 本规定自2017年10月8日起施行。 |